

18세기 전반 물선진상 관련 자료 분석

— 『진상별단등록』을 중심으로 —

전상욱

안동대학교

국/문/초/록

진상제는 지방의 특산물을 왕실에 봉진하는 제도이다. 진상물은 물품의 성격, 봉진시기, 용도에 따라 제향진상, 방물진상, 물선진상, 약재진상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물선진상은 전국의 산해진미를 봉진하는 것으로, 주로 식재료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물선진상은 다른 진상물과 달리 물품의 수량 경감 내지 일시적인 봉진 중지가 빈번하였다. 이는 물선진상의 경감을 통해 백성에게 물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자애로운 군주상을 확보하기 위한 국왕의 의도였다. 숙종 역시 재위기간 동안 빈번히 물선진상을 경감하거나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물선진상 변경 내역의 문서 보완이 미비하면서, 영조 즉위 직후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에 영조는 『진상별단등록』 간행을 통해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 경감내역을 분명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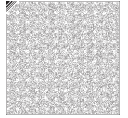
『진상별단등록』은 진상지역, 봉진시기, 봉진대상, 물종 및 수량, 경감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은 다른 내용에 비해 중요하다. 『진상별단등록』에 수록된 물선진상은 총 176종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어류, 패류, 건어류 등 수산물이 117종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선진상이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었고, 생물 이외에 말리거나 절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었다.

물선진상의 지역별 분정특징을 살펴보면, 경상도, 함경도, 강원도 순으로 물선진상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동해안과 접해 있다보니, 수산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석류, 유자 등 양남 지역의 대표적인 과실류가 분정되어 있었고, 제주도는 감귤류, 각종 전복가공품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정된 물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도에는 건어류, 염어류 등을 집중적으로 분정하였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주제어 진상별단등록, 진상제, 물선진상, 영조, 숙종

투고일자 : 2014. 09. 30 | 심사일자 : 2014. 10. 15 | 게재확정일자 : 2014. 10. 28



머리말

진상물은 지방의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이 왕실에 봉진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진상물은 세급의 성격이 강한 공물과 달리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물종이 지방에서 현물로 봉진되었다. 진상물은 물품의 성격, 봉진시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향진상, 방물진상, 물선진상, 약재진상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물선진상은 왕실의 어선(御膳)과 직결되는 물품으로, 전국의 산해진미를 바치는 진상물을 의미한다.

기존의 진상물에 관한 연구는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에 의해 처음 진행되었다. 다가와 고조는 조선전기 공납제를 주목하면서, 진상물의 종류, 수취방법 등을 규명하였다.⁰¹ 그러나 다가와 고조의 연구는 시기적으로 조선전기에 주목하다 보니, 공납제가 개혁되는 대동법 시행 이후 양상에 대해선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진상에 관해서는 대동법 시행, 공인의 상업활동 등에서 일부 언급되었을 뿐이다.⁰² 이외에 왕실의 궁중요리 재현과정에서 물선진상이 주목되었는데, 정조 즉위년(1776)에 간행된 『공선정례』에 수록된 물선진상의 종류 및 수량이 정리 분석되었다.⁰³ 그러나 『공선정례』와 달리 영조 4년(1728)에 간행된 『진상별단등록』은 김옥근에 의해 일부 소개되었을 뿐이다.⁰⁴ 이처럼 『진상별단등록』이 『공선정례』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진상별단등록』이 ‘정례’라는 완성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겠지만, 『진상별단등록』의 분석을 위해선 물선

진상의 물품명과 수량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⁰⁵

본 연구는 기존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진상별단등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진상별단등록』의 기재상 특징, 간행경위 및 의도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진상별단등록』의 간행을 통해 확정된 지방의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을 정리·분석하였고, 물선진상의 지방별 분정 특징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흡한 진상제 연구의 진작 뿐만 아니라, 음식사 연구에 있어서 폭 넓은 자료활용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진상별단등록』의 기재상 특징

『진상별단등록』은 영조 4년(1728)에 각도별 진상물의 물종 및 수량, 그리고 그 경감내역에 대해 비변사에서 작성한 별단을 예조에서 등록한 것이다. 『진상별단등록』은 내용면에서 크게 2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진상별단등록』의 간행 경위에 관한 내용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각도별 진상물의 물종 및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진상별단등록』의 간행이 그해 각도 진상물의 물종 및 수량을 확정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반부의 내용이 자료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진상별단등록』의 경상도, 대왕대비전의 일부를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진상별단등록』의 기재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01 田川孝三, 1964,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02 한영국, 1960·1961, 『湖西에 實施된 大同法』 上·下, 『歷史學報』 13·14.

한영국, 1961·1963·1964, 『湖南에 實施된 大同法』 上·二·三·四, 『歷史學報』 15·20·21·24.

김옥근, 1986, 『朝鮮王朝財政史研究』 1, 일조각.

김옥근, 1989, 『朝鮮王朝財政史研究』 3, 일조각.

이정철, 2012, 『대동법』, 역사비평사.

오미일, 1987, 『18·19世紀 새로운 真人權·塵契장설운동과 亂塵活動』, 『奎章閣』 14.

김동철, 1993, 『朝鮮後期 真人研究』, 한국연구원.

03 한복진, 2006,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04 김옥근, 1989, 앞의 책.

05 『진상별단등록』에는 각도별, 월별로 다양한 물선진상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같은 『진상별단등록』의 자료적 특징으로 인해, 『진상별단등록』 분석을 위해선 전산작업이 필수적이다. 『진상별단등록』을 excel에 전산작업을 하면 총 35,000여 셀(cell)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備邊司 ①慶尙道封進 ②朔膳名日物膳別單 ③大王大妃殿
④正月朔膳 ⑤海衣二十貼 早藿十斤 藁古一斤 單乾雉 四十首
貫目青魚二百尾 乾鰻短引五十貼 裂紅蛤三斗 乾大口魚三十
尾 紅蛤醢一缸二斗 乾栝子十五貼 ⑥以上十一種丙午減半

①은 진상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경기도·개성부·충청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함경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진상지역에서 평안도가 누락되어 있다. 조선 후기 평안도는 국방과 사신접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배려로 평안도에는 물선진상을 원칙적으로 분정치 않았다. 물론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의주 피난시절에 물선진상을 잠시 분정하였으나, 인조 즉위 직후에 혁파되었고, 이후에는 평안도에 대해서 물선진상을 분정하지 않았다.⁰⁶ 이로 인해 영조 4년(1728)에 간행된 『진상별단등록』에는 평안도가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다.

②와 ④는 진상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②에서는 삭선과 명일물선이 기재되어 있다. 삭선은 매월 초하루, 명일물선은 명절, 경정진하는 왕실의 경사에 바치는 진상이다. 이에 대해서 ④에서는 삭선은 월별로, 명일물선은 정조·단오·탄일·동지·납일 등으로 진상시기가 세분되어 있다.

③은 물선진상의 봉진대상으로, 대왕대비전·왕대비전·대전·중궁전·세자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대왕대비는 인원왕후(1687~1757), 왕대비는 선의왕후(1705~1730), 중궁전은 정성왕후(1692~1757), 세자궁은 경의군(1719~1728)을 의미하는데, 물선진상의 봉진대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관행적으로 대전·중궁전·세자궁을 기본으로 하고, 전왕과 전왕비가 생존할 경우 함께 물선진상을 바쳤다.⁰⁷

⑤는 물선진상의 물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물품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⁰⁸

• 어류(30종)

비늘 제거한 조기(400속), 고지(12.5두), 대구어창자(100개), 얼린 대구(40미), 얼린 송어(42미), 얼린 연어(20미), 백조어(10첩), 백청어(80개), 생과어(580미), 생대구(780미), 대구내장(1220개), 문어(316미), 백어(1340개), 조기(85미), 생선(136미), 송어(178미), 연어(246미), 은어(731동음), 적어(22미), 청어(527동음), 황어(335미), 굴비(510속), 세린석수어(290속), 송어알(107부), 오징어(1200첩), 전어(740미), 가자미(48미), 가자미알(12.5두), 해삼(27두, 1130개), 황석수어(13두)

• 패류(12종)

생복(27110개, 36.2두), 소라(25두), 무염생복(3000개), 생합(20두), 석염생복(9두), 석화(16두), 소염생복(33두), 열홍합(6두), 껍질 있는 생복(1100개), 긴맛조개(15두), 홍합(37두), 생소라(8두)

• 건어류(35종)

건송어(60속, 2435미), 건여항어(235미, 100첩), 건가범어(150미), 건고등어(385첩), 건광어(1483미), 건대구어(2761미), 건대하(607동음), 건문어(751미), 건복단인(730미), 건상어(60미), 건세린석수어(145속), 건소문어(850미), 건송어알(35부), 건숙복(2100개), 건연어(571미), 건오징어(5490미), 건원복(35첩), 건은어(670동음), 건전어(300미), 건가자미(270속), 건중하(78두), 건해삼(78두), 건해삼(196두), 건홍합(92.5두), 건황어(790미), 과메기(370동음), 관포연어(20미), 반건대구어(1162미), 반건문어(136미), 열건홍합(36두), 인복(1050주지), 장인복(1405주지), 전복(419첩), 조복(420첩), 추복(5930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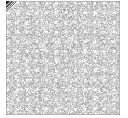
• 염어류(3종)

절인 생복(9두), 절인 송어(5미), 절인 은구어(7두, 1510미)

06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3월 18일.

07 앞의 책, 田川孝三, 1960, p.92쪽.

08 물선진상의 분류방식은 한복진, 2006, 앞의 책 참조.



• 해초류(14종)

미역귀(53근, 30두), 미역(2445근, 42주지), 조곽(740근, 90첩), 가사리(15근), 감태(1285주지), 곤포(256근), 세초조곽(60첩), 소해의(515첩), 오해조(17근), 우무(50근), 중곽(77근), 증곤포(109근), 다시마(237근), 김(235첩)

• 젓갈(23종)

송어식해(35.75두, 144편), 연어식해(24두, 432미), 고등어내장젓갈(59.6두), 고등어젓갈(540미), 대구어내장젓(91.4두), 대구알젓(128.9두), 방풍교침홍합해(10두), 생복식해(230.25두), 생자하해(20두), 생치식해(9.2두), 생합식해(24두), 조기알젓(36두), 송어해(59두), 연어해(696미), 은구어식해(135,095두), 자하해(9두), 죽순교침소은구어식해(9.2두), 죽순교침은구어식해(12두), 죽순교침홍합해(9두), 게젓(2570개), 홍합식해(4두), 홍합해(63.2두)

• 과실류(22종)

잣(205두, 100개), 감자(39720개), 꽃감(1303첩), 금귤(280개), 당금귤(2660개), 당유자(결실수에 따라 결정), 대추(9두), 동정귤(2720개), 비자(15두), 산귤(900개), 배(4480개), 날밤(196상자), 석류(1710개), 유감자(1120개), 유자(5440개), 은행(25두), 조홍시(2085개), 개암(40두), 청귤(890개), 호두(106두), 홍시(5025개), 황율(42두)

• 소채류(10종)

표고(195근, 78두), 송이(2919본), 죽순(1320본), 석이버섯(9근), 햇표고(12두), 종강(170두), 애참버섯(4두), 초강(34근), 절인 송이(29두), 절인 죽순(13두)

• 육류(18종)

편포(40조, 551개), 말린 노루고기(33구), 말린 꿩고기(1327수), 꿩자장원포(30조), 꿩자장장포(30조), 녹포(58첩), 단견장(16구), 단견치(125수), 반견치(40수), 날 사슴고기(52구), 기러기고기(44수), 오리고기(38수), 날 노루고기(42구), 날 돼

지고기(42구), 날 꿩고기(2227수), 날 토끼고기(32구), 꿩포(914근), 압자(21수)

• 기타(9종)

난(12.5두), 명사정과(8.4두), 다래정과(38두), 백산(390권), 머루정과(92항, 12.2두), 생강정과(17.3두), 이당(1050조), 꿀(137.9두), 장자(12.5두)

위에서 보듯이, 『진상별단등록』에는 총 176 종의 물선진상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건어류 35종(20%), 어류 30종(17%), 젓갈 23종(13%)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어류, 어류, 젓갈, 염어류, 해초류 등 각종 수산물이 117종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물선진상 중에는 머루정과, 다래정과, 백산 등 완성된 형태의 물종도 있지만, 대부분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생물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었다. 예를 들어, 생복은 통째로 말린 전복 이외에, 찌서 말린 생복(乾熟鮑), 찌서 둥글게 말린 생복(乾圓鮑), 두드려서 말린 생복(搥鮑), 절인 생복(鹽全鮑), 인복, 장인복, 조복, 석염생복, 소염생복 등으로 가공되었고, 육류 중에서도 날 꿩고기(生雉)는 말린 꿩고기(乾雉), 토막 낸 말린 꿩고기(單乾雉), 반건조한 꿩고기(半乾雉) 등으로 가공되어 왕실에 봉진하였다. 이 밖에 햇표고, 연초에 채취한 조곽(歲初早藿) 등 특정 시기에 채취한 물품을 봉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물종을 계량하는 단위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였다. 뒷박으로 달아서 하는 두(斗), 모양을 납작하여 장수로 세는 권(卷), 무게를 다는 근(斤), 날개로 세는 개(箇), 핑은수(首), 정과나 젓갈은 항(缸), 과실은 개 또는 상자, 노루고기·사슴고기 등은 구(口)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진상별단등록』에는 물품명과 수량 기재가 주를 이루지만, 다음과 같이 충청도는 물품명과 수량 이외에 가격(價米)이 함께 기재된 부분도 있다.

王大妃殿 正月朔膳 淸蜜一斗 價米三石五斗 生獐二口 價米六石內(減一石五斗 實四石五斗) 生雉二十首 價米八石 單乾

雉十首 價米三石五斗 洗鱗石首魚 五十束 價米八石五斗 乾
秀魚二十尾 價米二十石(減二十石十斗 實十七石五斗)

조초반에 총 14차례에 걸쳐서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 변경
이 발생하였다.

위 글에서 보듯이, 충청도는 물품명과 수량 이외에 가격(價米)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일부 물품의 경우는 감액된 비용과 실제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충청도에 일부 물품의 가격(價米)이 기재된 것은 호서대동법 시행 이후 충청도 물선진상의 조달방식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충청도의 물선진상은 호서대동법 시행 이후 생복, 유갑생복, 생저, 조홍시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경중에서 사주인에 의해 물품이 조달되었다.⁹ 그러다 사주인이 각전에 봉진하는 물선진상의 품질이 불량하여 효종 8년(1657) 이후부터는 호서청에서 각전에 물선진상 구입비를 납입하면, 각전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확보하게 되었다.¹⁰ 이로 인해 충청도의 물선진상은 호서대동법 시행 이후 현물상납이 아닌 비용을 각전에 납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충청도에는 물선진상의 가격이 기재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⑥은 물선진상 수량의 경감내역을 기재한 부분이다. 조선전기 진상물의 진상지역, 진상횟수, 진상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이 확정되면서, 진상제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¹¹ 그러나 물선진상은 전쟁, 흉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경감 내지 일시적으로 봉진을 중지하거나, 불필요한 물선진상은 폐지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변경내역이 ⑥에 기재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문서가 오래되거나, 불분명하여 상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숙종대 9차례(1688, 1692, 1695, 1702, 1705, 1707, 1713, 1716, 1717), 경종대 2차례(1721, 1724), 영조대 3차례(1726, 1727, 1728)로 숙종~영

『진상별단등록』의 간행경위와 의도

지금까지 『진상별단등록』의 기재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2장에서는 『진상별단등록』의 간행경위와 의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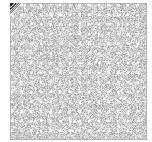
진상물은 각도의 토산(土産)을 고려하여 분정하였다. 이는 지방에서 진상물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그러나 토산은 시기가 흐름에 따라 빈번히 변경되었다. 이 경우 지방에서는 타지에서 진상물을 구매하여 봉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었다.¹²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숙종대에 진상물을 경감하거나, 불필요한 진상물은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조 즉위초반 녹포(鹿脯)와 같은 불필요한 물선진상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조 즉위초반에 진상물의 물품명 및 수량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는 숙종대 빈번히 이루어진 진상물의 경감 내지 폐지에 관한 문서정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조는 영조 3년(1727) 12월에 비변사로 하여금 예조와 군기시, 사옹원에 보관중인 진상본안(進上本案)을 상고하여 진상물의 구체적인 물종과 수량을 조사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를 별단(別單)으로 만들고, 만약 경감내역이 있으면 물품명 아래에 연조(年條)를 달고, 연조 및 문서가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상(未

09 『호서대동사목』 60조 “朔膳節産進上 及内局所納藥材等物 今皆自京封進而 銀口魚海衣等物 移送湖南乙仍 于本道仍 定者 只是臘猪六口 有匣生鰻七百介 生鰻二缸 生鰻食醃五缸 黄石秀魚十斗 早紅柿一天三百介 生松栢三百三十本 小螺醃四缸 此則皆是本道所産之物 自監營分定於各其所産官 而其價則本廳回本道所報 既以大同米從優磨鍊 可以無弊封進是白乎於.”

10 『승정원일기』 147책, 효종 8년 10월 5일 “引見時 上曰 湖西進上價米 各殿則仍前出給主人 而至於大妃殿 則主人輩封進之物 不合進御 寧依當初之議 以其價米入納 似當 諸卿之意 以爲何如 令議政鄭太和曰 臣意 自初各殿進上 竝欲以價米入納 而其時亦不無非之者 臣之所見 與初無異 而惶恐不敢更陳矣 兵曹判書許積曰 今雖自內以價買用 必無宮市之弊 或者曰有欠享上儀 而貢物主人之所納 亦是市上之物 此豈有愈乎 臣亦自當初設行時 欲竝以價米入納矣 上曰 自戊戌正月爲始 湖西大妃殿進上以價米入之.”

11 조선전기 진상에 관해선 田川孝三, 1960. 앞의 책 참조.

12 진상물의 봉진기한이 이르면 특정 물품의 과수요가 발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당시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봉진기한 이전에는 물품의 가격이 폭등하지만, 기한이 몇 일 지나면 물품의 가격이 다시 저렴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薦新進上曆錄』 권2, 신유년(1681) 8월 초 10일).



詳)이라는 주를 달도록 하였다.¹³ 이 같은 작업을 거쳐서 영조 4년(1728) 2월에 『진상별단등록』이 간행될 수 있었다. 그러면 『진상별단등록』을 간행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진상별단등록』의 간행작업을 주도한 이광좌(李光佐, 1674~1740)의 다음 발언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광좌가 말하길 “① 진상 문서(進上文書)란 원래 명백하지 않은 것이어서 지난번 물선 단자(物膳單子)를 고칠 때에 지금까지 존감(存減: 전대로 하는 것과 감해주는 것)한 사실을 많이 상고해내지 못하였습니다. ② 이번의 하교도 다만 거행 조건(舉行條件: 學條, 임금께 아뢴 조항)에 내기만 한다면 훗날에 또 명백하게 빙고(憑考)하지 못할 폐단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원일기(政院日記)에 실린다 해도 해가 오래 되면 분량이 방대하여 상고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의 단자(單子)의 예와 같이 제주의 물선(物膳)과 각 전(殿)의 진상 방물을 별단으로 써 올려 부표(付標: 찌지)를 붙이고 계(啓)자를 눌러 내려서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¹⁴

우선 이광좌는 ①에서 『진상별단등록』간행 이유로 당시 진상문서의 불명확함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중앙에서 지방의 진상물의 물종 및 수량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면, 중간관리의 횡령 내지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지방관은 봉여(封餘) 명목으로 진상물의 부패, 손상 명목으로 정해진 수량 이외에 진상물을 초과로 수취하였고, 이를 친인척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빈번하였다.¹⁵ 이 뿐 아니라,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했던 윤헌주(尹憲柱, 1661~1729)는 진상 황모(黃毛)를 착복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¹⁶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진상별단등록』간행을 통해 각도의 진상물 물종 및 수량을 분명히 함으로써, 수령 및 관찰사 등이 진상 명목으로 백성으로 과도하게 진상물을 수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 영조는 이전과는 달리 왜 『진상별단등록』이라는 하나의 책을 간행하였을까? 진상물의 경감 내지 증지에 대해선 이전에도 그 수량 및 품종의 변화를 일정부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②에서 보듯이, 각도에서 봉진되는 진상물의 물종 및 수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승정원일기에 수록해 두면 추후에 참고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영조는 『진상별단등록』을 간행한 것이다.

이 밖에 『진상별단등록』은 17세기 후반 잦은 자연재해 결과로 시행된 재정정책과도 관련이 깊었다. 숙종 21년(1694) 이후부터 5년여 지속된 을병대기근과 숙종 30년(1703)부터 5년여 지속된 홍역의 대유행으로 수많은 인명의 희생과 사회 기능마비가 발생하였다.¹⁷ 국가적으로도 국방전, 아문둔전의 확대에 의한 국가 수세지 감소로 인해 재정고갈이 현실화되고 있었다.¹⁸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책은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후반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백성들의 유리도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절감시키는 정책은 재정이문의 긴축운영, 공인들의 수

13 『비변사등록』 82권, 영조 3년 12월 30일.

司啓辭 濟州朔膳物種及各道進上方物物種 竝別單書入事命下矣 取考禮曹·軍器寺·司糶院進上本案 磨准膳抄 而方物則各殿 各爲一別單 稱慶陳賀時 所封進方物物膳及濟州朔膳 亦各爲別單以入 曾前姑減者 各其物種下 具年條懸註 年條及文書久遠未詳者 註以未詳之意敢啓 答曰 知道.

14 『비변사등록』 83권, 영조 4년 1월 7일.

今正月初五日朝參入侍時 上曰 濟州乃是絕遠海島之地 故凡於方物進上等事 自先朝每加軫恤 今不可闕漏 別單書入兩東朝三名日進上方物中 誕日方物外 正朝·冬至方物 慈聖以必欲除減爲教 而如干方物不宜減除事陳達 而慈聖一向勤擊 其在養志之道 當爲奉承 誕日方物外 正朝·冬至兩名日方物姑減事分付 其外別方物·若邦慶稱慶之時 則依兩名日例 亦爲代封事 分付可也 領議政李曰 聖教及此 實是千古未有之盛德 兩東朝軫恤念民生 命減方物 尤是古所未聞之至德 如此而民心不感悅 國脈不回蘇者 未之有也 若此不已 我東國其庶幾矣 此實爲祈天永命之基本 臣心喜悅 不可盡達 即當依下教舉行 而進上文書 元不明白 頃者物膳單子修正時 前後存減 多不能考出 今此下教 只出舉行條件 則日後亦似有不能明白考據(據)之弊 雖登於政院日記 年久後浩瀚 不能考出矣 依向日單子例 濟州物膳乃各殿進上方物別單書入 付標踏啓字以下 以爲永久遵行之地何如 上曰 方物中亦有減者 書入可也.

15 이성임, 1995,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農檀學報』 18.

16 『경중실록』 권10, 경종 2년 12월 2일.

17 김성우, 1997,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

18 송찬섭, 2000, 「숙종대 재정 추이와 경자양전」, 『역사와 현실』 36 ; 송양섭, 2008, 「숙종조의 재정·부세정책」, 『韓國人物史研究』 9.

입감소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조는 물선진상을 경감하였다. 『진상별단등록』에 의하면 영조 2년(1726), 영조 3년(1727), 영조 4년(1728)에 물선진상이 경감되었다. 이를 통해 영조는 왕실재정도 절용(節用)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재정지출 경감이라는 당시의 재정정책 시행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¹⁹

『진상별단등록』에 나타난 물선진상의 수록양상

지금까지 『진상별단등록』의 간행경위와 의도에 대해 살펴봐왔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진상별단등록』에 수록된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각도별로 물품의 특성에 따라 물선진상을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경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종(22%)의 물선진상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함경도 57종(19%), 강원도 55종(19%) 순으로 많은 물선진상을 부담하였다. 특히 이들 지역은 동해안과 접하다보니, 수산물인 강원

도는 42종, 함경도는 46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도 역시 39종으로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물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강원도와 함경도에 비해 과실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상도에는 전라도와 함께 대표적인 양남지역 특산물인 석류와 유자, 홍시 등이 분정되어 있었다. 이 밖에 제주도는 과실류의 비중이 전체 22종에서 10종(4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동정굴, 산골, 감자, 유감자 등 각종 감귤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었고, 이 중에서 감자, 동정굴, 유감자의 제철인 10월~11월 사이에 20차례에 걸쳐 선박으로 운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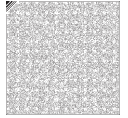
이처럼 각도별로 수록된 물선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물선진상을 배정함에 있어 운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함경도 등지는 어류와 패류와 같은 생물(生物) 이외에 건어류, 염어류, 젓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선박으로 운반해야 하는 제주도는 생물(生物)이 1종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서울에서 먼 곳에 위치한 이들 지역에 운반과정에서 부패할 가능성이 적은 건어류, 염어류, 젓갈 등을 분정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진상별단등록』에 의하면, 경상, 강원, 함경, 전라에 분정된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이 경기, 충청, 황해 등 서울 인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대동법의

【 표 1 】 도별 물선진상 수록양상

도명	어류	패류	건어류	염어류	해초류	젓갈	과실류	소채류	육류	기타	합계
경기도	1						1		2	1	5(2)
개성부	2							1			3(1)
충청도	1	3	2			1	3	1	5		16(5)
황해도	5	4	2			6	3	1		1	22(8)
강원도	9	3	12	3	3	12	2	3	5	3	55(19)
경상도	6	4	15	1	8	5	9	4	11	2	65(22)
전라도	5	2	7	1	4	4	8	5	10	5	51(17)
제주도			4		4		10	2	2		22(7)
함경도	14	2	13		5	12	1		10		57(19)
전체											176

19 첩선(徹膳), 감선(減膳) 등 물선진상 경감이 가지는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 함규진, 2010, 「조선 역대 왕들의 감선(減膳): 그 정치적 함의」 『한국학연구』 34 참조.



영향으로, 경기와 충청은 대동법 시행 이후 상당수 물선진상이 서울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상, 강원, 함경, 전라는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물선진상의 현물납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진상별단등록』에 다양한 물종이 수록된 것이다. 그러면 지역별로 수록된 구체적인 물선진상에 대해 정리·분석토록 하겠다.

• 경기도 물선진상

봉진시기	물종
정조	머루정과 23항, 생선 34미, 생울 49상자, 날 꿩고기 130수, 날 노루고기 13구
동지	머루정과 23항, 생선 34미, 생울 49상자, 날 꿩고기 130수, 날 노루고기 13구
탄일	머루정과 23항, 생선 34미, 생울 49상자, 날 꿩고기 135수, 날 노루고기 13구
칭경진하	머루정과 23항, 생선 34미, 생울 49상자, 날 꿩고기 130수, 날 노루고기 13구

경기도는 정조·동지·탄일 등 삼명일진상과 왕실에 경사가 있을 시 봉진하는 칭경진하로 5종의 물선진상을 봉진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타도와 동일하게 삭선진상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매일, 3일, 10일 간격으로 봉진하는 일차진상도 존재하고 있었다. 실제 정조 즉위년(1776)에 간행된 『공선정례』에는 62종의 물선진상이 수록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종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상별단등록』에는 5종의 물선진상이 수록된 것은 『진상별단등록』의 간행방향과 관련이 있었다. 『진상별단등록』간행 이전 경기도는 삭선진상과 일차진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⁰ 이로 인해 『진상별단등록』에는 정조·동지·탄일·칭경진하에 5종의 물종만 수록되었다. 『진상별단등록』간행 당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의 삭선진상과 일차진상을 『공선정례』을 통해 추정해보면, 주로 소채류와 과실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개성부 물선진상

봉진시기	물종
8월(초차)	송이(246본)
8월(이차)	송이(246본)
8월(삼차)	송이(196본)
11월(초차)	백어(380개)
11월(이차)	백어(480개)

개성부는 송이와 백어가 특산이어서 8월에는 3차례에 걸쳐 송이버섯을 688본, 11월에 2차례에 걸쳐 백어 860개를 봉진하였다.

• 황해도

봉진시기	물종
1월	없음
2월	청어 46동음
3월	조기 850미, 생자하해 20두, 거린석수어 400속
4월	조기알젓 24두, 건승어알 35부
5월	건대하 42동음
6월	없음
7월	은어 30동음, 은어식해 11.25두
8월	송이 850본, 생합 20두, 개암 9두
9월	잣 20두, 생합식해 24두, 자하해 9두
10월	생복 2000개, 배 460개, 꿀 8두
11월	얼린 송어 42미, 긴맛조개 15두
12월	없음

황해도는 삭선진상만 수록되어 있었다. 1월, 6월, 12월은 없고, 황해도의 특산물인 어류와 패류, 젓갈류가 주로 봉진되었다. 『공선정례』에 의하면 황해도는 경기도와 함께 각종 곡류가 분정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와 달리 주로 햇좁쌀, 햇기장, 햇참쌀, 햇밀가루 등 햇곡식을 봉진하였다. 다만 이들 물종이 『진상별단등록』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해당 물종이 숙종 19년(1693)부터 중앙의 신곡계에 의해 조달되고, 황해도에서의 현물상납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²¹

20 『비변사등록』 83권, 영조 4년 1월 8일

21 『강원청사례 부 해서청사례 공잉색식례』 공물조, “新穀系(進排各殿進上 大麥 新黍 粟 稻 稷等米 曾自海西進排 肅宗癸酉作貢).”

• 충청도

봉진시기	물종
1월	껍질있는 생복 1100개
2월	없음
3월	없음
4월	황석수어 13두
5월	소라 25두
6월	없음
7월	없음
8월	송이 731본, 조흥시 383개
9월	생복 25두, 조흥시 850개
10월	없음
11월	없음
12월	없음
동지	생복식해 10두
탄일	생복식해 15두
청경진하	건세란석수어 145속, 건송어 60속, 단건치 65수, 대추 9두, 생복식해 15두, 날 노루고기 9구, 날 꿩고기 67수, 오리고기 21수, 호두 8두

충청도는 삭선진상 6종을 봉진하였다. 이 중에서 황석수어는 단위가 두(斗)인 것으로 미루어, 크기가 작은 것으로 첫 갈용으로 바친 듯하다. 충청도는 타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물선진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호서대동법 시행과정에서의 물선진상 처리와 관련이 있다. 호서대동법 시행 이후 충청도의 물선진상은 서울에서 구매가 어려운 일부 물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물선진상을 쌀과 포로 서울에 납부하면, 서울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물선진상의 물품명과 수량, 비용이 『진상별단등록』의 충청도 편 후미에 기재되어 있는데, 영조 4년(1728)에 충청도에서는 37종의 물선진상 구입비용으로 각전에 3,000여석의 비용을 납입하였다.

• 강원도

봉진시기	물종
1월	건문어 29미, 건여항어 95미, 대구내장젓 4두, 대구내장 100개, 반건대구어 65미, 생복 950개, 송어식해 12두, 꿀 3두, 조과 32근, 생복식해 6두
2월	건광어 60미, 건대구어 95미, 건문어 40미, 단건치 64수, 미역 47근, 생복 1000개, 날 노루고기 5구, 날 꿩고기 22수, 홍합 10두, 애참버섯 4두, 꿀 3두

봉진시기	물종
3월	건문어 27미, 건여항어 60미, 말린 노루고기 2구, 반건대구어 75미, 방풍교침홍합해 10두, 미역 30근, 생복 1500개, 송어 32미, 꿀 3두, 미역 12첩
4월	건대구어 110미, 건문어 16미, 건원첩 6첩, 단건치 64수, 생복 1500개, 송어 32미, 송어식해 12두, 꿀 3두
5월	건대구어 85미, 건문어 28미, 건해삼 15두, 건홍합 15두, 고등어내장젓 9두, 송어식해 3두, 꿀 3두, 석역생복 9두
6월	간상어 20미, 건여항어 50미, 건연어 32미, 건해삼 9두, 은어 32동음, 죽순교침은구어식해 12두, 꿀 3두
7월	건원복 9첩, 건해삼 10두, 미역 20근, 생복 400개, 은어 32동음, 청말 3두, 홍합해 6두, 생복식해 12두
8월	건광어 65미, 건대구어 110미, 건여항어 30미, 생복 900개, 송어 12미, 송이 650본, 은어 10동음, 전어 320미, 꿀 3두
9월	건대구어 85미, 건문어 32미, 단건치 40수, 잣 20두, 머루정과 6두, 생복 600개, 연어 32미, 연어알젓 8두, 꿀 6두, 절인 송이 6두, 편포 40조, 생복식해 3두
10월	건연어 100미, 건문어 150동음, 단건치 220수, 대구내장젓 8두, 대구알젓 10두, 다래정과 12두, 머루정과 6.2두, 대구어 60미, 문어 15미, 연어 32미, 은어 150동음, 날 노루고기 4구, 날 꿩고기 32수, 연어알젓 8두, 연어식해 6두, 꿀 3두
11월	건문어 23미, 건문어 200동음, 대구내장젓 2두, 대구알젓 8두, 반건대구어 100미, 대구어 40미, 문어 10미, 생복 900개, 은어 200동음, 날 노루고기 4구, 적어 22미, 날 꿩고기 32수, 황어 20미, 연어알젓 4두, 절인 송어 5미, 조과 32근, 꿀 3두
12월	건문어 20미, 건문어 320동음, 단건치 80수, 대구내장젓 8두, 대구알젓 8두, 반건대구어 57미, 대구어 40미, 문어 15미, 생복 600개, 날 노루고기 5구, 생치 39수, 조과 1근, 꿀 3두
정조	건문어 50미, 건연어 82미, 단건치 184수, 대구내장젓 8.5두, 대구알젓 8.5두, 반건대구어 90미, 반건문어 36미, 미역 129근, 대구 65미, 문어 45미, 배 510개, 날 노루고기 13구, 날 꿩고기 120수, 연어식해 2두, 조과 35근, 꿀 5두, 김 43첩
탄일	건대구어 115미, 건문어 58미, 건여항어 100첩, 건원복 20첩, 건해삼 19.5두, 건홍합 19.5두, 잣 19.5두, 미역 150근, 생복 2050개, 송어 62미, 은어 41동음, 송어식해 11.75두, 전어 420미, 꿀 7.7두, 생복식해 11.75두
동지	건문어 60미, 건연어 56미, 단건치 160수, 대구내장젓 6두, 대구알젓 7.5두, 다래정과 13두, 잣 17.5두, 대구 65미, 문어 46미, 연어 28미, 날 노루고기 13구, 날 꿩고기 90수, 연어식해 8두, 은구어식해 3두, 꿀 5두, 생복식해 2두, 절인 생복 4.5두
청경진하	건문어 65미, 건연어 56미, 단건치 160수, 대구내장젓 6.5두, 대구알젓 8두, 다래정과 11두, 잣 22두, 대구 50미, 문어 34미, 생복 2300개, 연어 22미, 날 노루고기 13구, 날 꿩고기 90수, 절인 은어 3.5두, 연어식해 8두, 은구어식해 3두, 꿀 7두, 절인 생복 4.5두

강원도는 전국에서 3번째 많은 55종의 물선진상을 부담하였다. 삭선과 명일물선을 부담하고 있었고, 건어류와 젓갈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강원도는 대표적인 특산물인 생복



을 연간 17,100개를 봉진하였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강원도는 동해안과 접해 있는 함경도, 경상도와 대구, 연어, 문어 등 어류 중에서 중복되는 물종이 일부 보인다.

• 경상도

봉진시기	물종
1월	건대구 60미, 건복단인 100첩, 꽃감 30첩, 과메기 140동음, 단건치 80수, 대구알젓 6두, 반건대구어 90미, 미역 40근, 날 평고기 120수, 소해의 90첩, 열홍합 6두, 조곽 20근, 표고 2근, 김 40첩, 홍합해 4두
2월	무염생복 700개, 생복 500개, 건광어 80미, 건대구 120미, 건상어 20미, 건소문어 120미, 미역귀 4근, 과메기 20동음, 단건치 170수, 대구알젓 4근, 미역 40근, 조곽 95근, 김 40첩, 생복식해 7두, 소염생복 4두
3월	건광어 80미, 건대구 115미, 건대문어 18미, 건복단인 80첩, 건전어 120미, 미역귀 2근, 녹포 10첩, 단건치 80수, 미역 40근, 오해조 13근, 조곽 20근, 표고 2근, 김 40첩, 생복식해 4두, 소염생복 9두
4월	건광어 60미, 건대구어 100미, 건복단인 80첩, 건소문어 100미, 건장 8구, 건광어 160미, 녹포 10첩, 단건치 80수, 편포 30개, 표고 13근, 홍합해 14두, 소염생복 4두
5월	건가범어 150미, 건광어 80미, 건복단인 70첩, 건소문어 120미, 미역귀 29근, 미역 220근, 편포 20개, 생복식해 4두
6월	건광어 80미, 건복단인 80첩, 건전어 100미, 건홍합 18두, 미역귀 2근, 미역 30근, 은어 20동음, 죽순 440본, 열건홍합 6두, 우무 50근, 은구어식해 4두, 전복 35첩, 편포 30개
7월	가사리 4근, 건광어 80미, 건상어 20미, 건해삼 18두, 미역귀 4근, 녹포 6첩, 미역 40근, 은어 72동음, 석이버섯 9근, 열건홍합 6두, 오해조 4근, 은구어식해 15두, 편포 14개
8월	가사리 11근, 건복단인 80첩, 건소문어 80미, 녹포 12첩, 잣 13두, 백조어 10첩, 열건홍합 12두, 절인 은어 450미, 개암 6두, 편포 14개, 표고 4근, 호두 25두, 홍합식해 4두, 소염생복 4두
9월	건광어 170미, 건복단인 80첩, 광이 4근, 반건치 40수, 미역 40근, 석류 200개, 열건홍합 6두, 조흥시 852개, 개암 25두, 절인 송이 15두, 표고 2근, 호두 10두
10월	생복 4두, 건광어 80미, 건복단인 80첩, 건소문어 180미, 꽃감 65첩, 미역귀 4근, 단건치 60수, 잣 44두, 미역 40근, 석류 220개, 유자 140개, 절인 송이 8두, 호두 10두, 홍시 1200개, 황울 24두
11월	생복 3.2두, 건복단인 80첩, 건소문어 120미, 꽃감 105첩, 미역귀 4근, 녹포 10첩, 단건치 60수, 잣 100개, 미역 40근, 문어 18미, 날 노루고기 3구, 청어 120동음, 열건홍합 6두, 유자 480개, 해의 20첩, 홍시 320개, 생복식해 4두
12월	무염생복 700개, 생복 4두, 건광어 80미, 건대구 100미, 꽃감 20첩, 고지 4.5두, 난 4.5두, 녹포 10첩, 단건치 60수, 대구알젓 4두, 미역 40근, 대구 120미, 날 노루고기 3구, 청어 100동음, 유자 100개, 내장 4.5두, 조곽 30근, 편포 20개, 김 40첩, 홍합해 4두, 소염생복 4두
정조	건광어 210미, 건대구 175미, 꽃감 160첩, 과메기 210동음, 단건치 180수, 잣 18두, 청어 210동음, 조곽 210근

봉진시기	물종
단오	건전어 80미, 건해삼 17두, 단건치 180수, 전복 55첩, 표고 11근
탄일	건대문어 70미, 단건장 16구, 단건치 220수, 잣 18두, 날 사슴고기 5구, 날 노루고기 6구, 날 평고기 70수, 날 토끼고기 4구, 전복 70첩, 호두 15두, 황울 18두, 소염생복 8두
납일	날 사슴고기 14구, 날 노루고기 17구, 날 평고기 220수, 날 돼지고기 11구, 날 토끼고기 12구
청경진하	무염생복 1600개, 생복 500개, 꽃감 260첩, 고지 8두, 난 8두, 반건대구 210미, 대구 240미, 문어 35미, 내장 8두, 건대구 180미

경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종의 물산진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경상도의 물산진상은 어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경상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과메기를 봉진하였다. 전라도와 함께 단오에도 물산진상을 봉진하였고, 과실류는 석류, 유자, 홍시 등 전라도와 중복되는 물종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서울까지의 운반을 고려하여 수산물 중에서 건어류의 비중이 타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전라도

봉진시기	물종
1월	표고 5근, 꿀 5두, 조곽 43근, 전복 12첩, 장인복 78주지, 소해의 45첩, 생복 630개, 미역 75근, 말린 평고기 72수, 건오징어 350미, 꽃감 62첩, 건승어 40미, 감태 130주지
2월	편포 57개, 꿀 5두, 조곽 43근, 은구어식해 20두, 소해의 45첩, 미역 75근, 말린 평고기 75수, 건승어 80미, 건대하 47동음, 감태 135주지
3월	표고 16근, 편포 42개, 꿀 5두, 조곽 45근, 전복 12첩, 장인복 95주지, 소해의 45첩, 세린석수어 290속, 미역 75근, 말린 평고기 4수, 건승어 125미, 건대하 45동음
4월	편포 57개, 꿀 5두,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은구어식해 12.5두, 승어알 107부, 말린 평고기 75수, 건오징어 420미, 건대하 48동음
5월	편포 42개, 꿀 5두,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콜비 90속, 죽순 440본, 미역 77근, 건승어 200미, 건대하 48동음
6월	편포 42개, 절인 죽순 13두, 꿀 5두,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죽순 440본, 미역 77근, 말린 평고기 75수, 건오징어 420미, 건승어 316미, 건대하 63동음
7월	편포 40개, 꿀 5두,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절인 은어 630미, 은어 42동음, 생복식해 10두, 미역 77근, 말린 평고기 45수, 건오징어 430미, 건승어 181미
8월	표고 6근, 꿀 5두,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은구어식해 12.5두, 생복식해 7.5두, 말린 평고기 60수, 건중하 78두, 말린 노루고기 5구, 건승어 80미
9월	호두 20두, 표고 5근, 초강 17근, 꿀 5두,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석류 420개, 말린 평고기 45수, 건숙복 1250개, 건승어 96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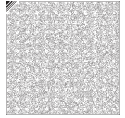
봉진시기	물종
10월	홍시 495개, 호두 20두, 꿀 5두,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은구어식해 7.5두, 유자 850개, 생복 1100개, 미역 77근, 말린 평고기 60수, 꽃감 192첩, 건승어 79미, 건대하 63동음, 감태 130주지, 건대하 63동음
11월	홍시 630개, 편포 30개, 초강 17근, 꿀 5두,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은구어식해 12.5두, 유자 290개, 소해의 45첩, 미역 73근, 말린 평고기 75수, 꽃감 42첩, 건대하 63동음, 감태 135주지
12월	편포 30개, 꿀 5두, 조과 43근, 전복 12첩, 장인복 85주지, 은구어식해 7.5두, 유자 230개, 소해의 45첩, 미역 73근, 말린 평고기 60수, 꽃감 42첩, 건승어 196미, 건대하 63동음, 감태 135주지
정조	전복 37첩, 이당 1350조, 유자 420개, 석류 390개, 오리고기 38수, 기러기고기 38수, 생복 850개, 생강정과 4.7두, 미역 220근, 백산 390권, 말린 평고기 125수, 꽃감 155첩, 건승어 200미, 감태 220주지
단오	죽순교침소은구어식해 9.2두, 조기알젓 12두, 굴비 420속, 단견치 125수, 견오징어 420미, 건승어 95미
탄일	홍합 27두, 해상 27두, 표고 42근, 편포 43개, 꿀 6.2두, 전복 30첩, 장인복 137주지, 절인 은어 430미, 소해의 200첩, 생강정과 4.2두, 미역 200근, 잣 13두, 말린 평고기 125수, 견오징어 1150미, 건속복 850개, 건승어 185미, 건대하 62동음
동지	홍시 1190개, 표고 42근, 전복 30첩, 장인복 165주지, 은행 12.5두, 유자 420개, 석류 240개, 생복 850개, 배 850개, 생강정과 4.2두, 미역 200근, 명사정과 4.2두, 말린 평고기 125수, 견오징어 1150미, 꽃감 85첩, 건승어 281미, 감태 200주지, 표고 5근
납일	날 평고기 280수, 날 돼지고기 11구, 날 노루고기 20구, 날 사슴고기 14구
칭경진하	홍시 1190개, 표고 45근, 전복 30첩, 장인복 165주지, 은행 12.5두, 유자 430개, 석류 240개, 생복 850개, 배 850개, 생강정과 4.2두, 미역 200근, 명사정과 4.2두, 말린 평고기 125수, 견오징어 1150미, 꽃감 85첩, 건승어 281미, 감태 200주지, 종강 170두

전라도는 전국에서 4번째 많은 51종의 물선진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매월 삭선진상 뿐만 아니라, 정조·단오·탄일·동지·납일·칭경진하 등 다양한 시기에 물선진상을 봉진하였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조기, 죽순, 생강정과를 봉진하였고, 과실류 중에서 경상도와 중복되는 물종이 다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 대표적인 향신료인 종강(種薑)을 170두를 봉진하였는데, 진상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종강의 생산시기가 7월말~8월초인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봉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주도

봉진시기	물종
1월	
2월	인복 90주지, 조과 420첩, 청굴 890개, 추복 410첩
3월	미역귀 30두, 미역 42주지, 인복 80주지, 추복 400첩
4월	추복 880첩, 인복 160주지, 표고 33두
5월	추복 880첩, 표고 33두
6월	오징어 240첩, 인복 160주지, 추복 1280첩
7월	오징어 480첩, 인복 160주지, 추복 800첩
8월	비자 15두, 오징어 280첩, 인복 160주지, 추복 800첩
9월	오징어 200첩, 유자 2080개, 인복 80주지, 추복 480첩
10월 11월(초운)	감자 1440개, 금굴 280개, 당금굴 420개
10월 11월(이운)	감자 252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320개
10월 11월(삼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10월 11월(사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10월 11월(오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10월 11월(육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10월 11월(칠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10월 11월(팔운)	감자 960개, 동정굴 480개, 유감자 840개
10월 11월(구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일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이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삼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사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오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육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칠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팔운)	감자 2040개, 당금굴 140개, 동정굴 160개
10월 11월(십구운)	감자 1920개, 산굴 900개, 동정굴 160개, 유감자 140개
10월 11월(이십운)	감자 1920개, 동정굴 160개, 유감자 140개, 당유자(결실수에 따라 봉진)
12월	퀘자장원포 30조, 퀘자장장포 30조, 햇표고 12두, 세초 조과 60첩, 조과 90첩

18세기 제주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진상별단등록』에는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물선진상의 대부분이 감귤과 각종 전복가공품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물품인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에서 감자, 동정굴, 산굴, 당금굴 등 각종 감귤류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감자, 당금굴, 동정굴, 유감자의 수확시기인 10월~11월 사이에 20차례에 걸쳐서 선박으로 운반하였다. 그리고 당유자는 대전에만 봉진하였는데, 해당 물품은 결실수를 고려하여 수량을



확정하였다. 이 밖에 전복 이외에 추복, 인복, 장인복 등 다양한 형태의 전복가공품과 작은 노루로 만든 육포의 일종인 꿩 자장원포, 꿩자장장포 등 특수한 물종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 함경도

봉진시기	물종
1월	건대구 100미, 건연어 20미, 곤포 11근, 반건대구 60미, 과어 100미, 대구내장 1220개, 청어 20동음, 황어 255미, 연어알젓 5.2두, 조과 20근, 다시마 20근, 해삼 1130개
2월	건과어 1100미, 건대구어 60미, 건문어 29미, 건가자미 230속, 곤포 20근, 반건대구 60미, 문어 20미, 청어 10동음, 조과 20근, 종과 77근, 다시마 20근
3월	건과어 100미, 건대구어 100미, 건문어 20미, 건황어 630미, 관포연어 20미, 송어 20미, 황어 60미, 송어해 216미, 연어식해 48미, 다시마 127근
4월	건대구 175미, 건문어 20미, 건해삼 8두, 곤포 20근, 송어 20미, 송어해 48미, 가자미 48미, 가자미알 12.5두
5월	건대구 60미, 건문어 20미, 건해삼 45두, 고등어내장젓 23두, 고등어젓갈 420미, 송어식해 48편
6월	건고등어 380척, 건대구 60미, 건문어 20미, 건해삼 6두, 고등어내장젓 18.4두, 곤포 115근, 홍합해 18.4두
7월	건광어 300미, 건대구 60미, 건문어 20미, 건해삼 6두, 고등어내장젓 9.2두, 연어 10미, 송어식해 48편
8월	건문어 20미, 건해삼 6두, 곤포 20근, 반건대구 40미, 연어 20미, 연어해 192미, 증곤포 64근, 다시마 20근
9월	건연어 20미, 반건대구어 195미, 반건문어 65미, 연어 20미, 송어식해 48편, 연어알젓 18.2두, 은구어식해 32.2두
10월	건연어 125미, 대구알젓 9.2두, 반건대구 60미, 대구어 70미, 배 1180개, 문어 48미, 연어 20미, 은어 100동음, 연어알젓 5.2두
11월	건대구 75미, 건문어 22미, 대구내장젓 20.6두, 대구알젓 20.6두, 과어 180미, 대구 30미, 문어 10미, 생복 650개, 청어 21동음 석화 15두, 연어식해 48미, 조과 42근
12월	건대구 60미, 말린 노루고기 18구, 말린 꿩고기 140수, 대구내장젓 9.2두, 대구알젓 9.2두, 반건대구 40미, 날 사슴고기 5구, 날 노루고기 16구, 날 돼지고기 4구, 날 꿩고기 210수, 편포 40개
정조	건과어 300미, 건대구 100미, 건문어 20미, 건연어 40미, 고등어젓갈 120미, 대구내장젓 18.4두, 대구알젓 18.5두, 얼린 대구 40미, 얼린 연어 20미, 과어 300미, 문어 20미, 생복 1400개, 기라기고기 6수, 날 꿩고기 40수, 생치식해 9.2두, 석화 10두, 연어알젓 5.2두, 연어식해 96미, 연어해 96미, 껌포 180근
탄일	건대구 210미, 건문어 45미, 건해삼 18두, 건홍합 27두, 곤포 30근, 반건문어 35미, 연어 30미, 연어해 144미, 증곤포 45근, 껌포 300근
동지	건대구 40미, 건문어 20미, 건연어 40미, 대구알젓 9.2두, 반건대구 40미, 생복 600개, 연어알젓 5.2두, 연어식해 96미, 연어해 96미, 껌포 140근, 홍합해 9.2두
납일	날 사슴고기 14구, 날 노루고기 16구, 날 돼지고기 8구, 날 꿩고기 270수, 날 토끼고기 16구
칭경진하	건대구 123미, 건문어 36미, 건해삼 23두, 건홍합 13두, 곤포 40근, 생복 1080개, 연어식해 144미, 연어해 168미, 껌포 294근, 다시마 50근, 홍합해 7.5두

함경도는 조선후기 수산물이 풍부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렇다보니, 전체 56종에서 46종(81%)이 어류, 건어류, 패류, 젓갈, 해초류 등 수산물이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한랭성 어종인 대구, 과어, 연어를 빈번히 봉진하였는데,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류와 패류 등 생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함경도는 타도에 비해 물선진상의 운반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험난한 산지가 많은 지역이다보니, 날 사슴고기, 날 노루고기, 날 돼지고기 등 육류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맺음말

영조 4년(1728)에 간행된 『진상별단등록』에는 총 176종의 물선진상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수산물이 약 67%(117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물선진상은 주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었고, 생물 이외에 말리거나 절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었다.

이 같은 물선진상은 전국의 산해진미를 봉진하는 진상으로 왕실의 어선(御膳)과 직결되었다. 물선진상은 선조(先祖)에 봉사(奉祀)하는 제향진상과 달리 물품의 경감 내지 폐지가 빈번하였다. 특히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국왕은 물선진상의 봉진 중지 내지 경감을 통해 백성을 위로하였다. 이는 『진상별단등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7세기 후반 ‘경신 대기근’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숙종은 지방에서 봉진되는 물선진상을 경감함으로써 자애로운 군주의 모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잦은 물선진상의 경감이 문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하였다. 이에 영조는 영조 4년(1728)에 『진상별단등록』간행을 명하였고, 이를 통해 물선진상의 물종 및 수량, 경감내역이 확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영조 역시 불필요한 물선진상을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선왕인 숙종의 정책을 계승하였다.

참고문헌

- 『강원청사례 부 해서청사례 공인색식례』
- 『공선정례』
- 『비변사등록』
- 『승정원일기』
- 『영조실록』
- 『진상별단등록』
- 『호서대동사목』
- 김동철, 1993, 『朝鮮後期 貢人研究』, 한국연구원
- 김성우, 1997, 「17세기의 위기와 숙종대 사회상」 『역사와 현실』 25
- 김옥근, 1989, 『朝鮮王朝財政史研究』 3, 일조각
- 김옥근, 1986, 『朝鮮王朝財政史研究』 1, 일조각
- 송양섭, 2008, 「숙종조의 재정 · 부세정책」 『韓國人物史研究』 9
- 송찬섭, 2000, 「숙종대 재정 추이와 경자양전」 『역사와 현실』 36
- 오미일, 1987, 「18 · 19世紀 새로운 貢人權 · 慶契창설운동과 亂慶活動」 『奎章閣』 14
- 이성임, 1995,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農檀學報』 18
- 이정철, 2012, 『대동법』, 역사비평사
- 田川孝三, 1964,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 한복진, 2006,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영국, 1961 · 1963 · 1964, 「湖南에 實施된 大同法」 上 · 二 · 三 · 四 『歷史學報』 15 · 20 · 21 · 24
- 한영국, 1960 · 1961, 「湖西에 實施된 大同法」 上 · 下 『歷史學報』 13 · 14
- 함규진, 2010, 「조선 역대 왕들의 감선(減膳): 그 정치적 함의」 『한국학연구』 34



Mulseon-Jinsang Related Document Analysis in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Jeon Sang-wuk

Andong University

Abstract

Jin-Sang is a local specialty donation to the palace. A local specialty donation to the palace is classified Jehyang, Bangmul, Mulseon, Medicine according to characteristic, when, use. Among these, Mulseon Jin-Sang is Most foods. And King was reduced Mulseon Jin-Sang in order to obtain a good image of the king. King Suk-Jong was frequently reduced Mulseon. But frequently changes of goods did not reflect to document. So type of goods, quantity is not clear in early 18th century.

In 1728, King Yeong-Jo was published a Jingsangbyeldandngrok to clear type of goods, quantity. This book is written area, timing, quantity of Mulseon. Among these, type of goods, quantity are important. This book was written 176 kinds of goods. These goods was most of the fishery. And raw materials are largely accounted. In addition to processing the various creatures become like dried, pickled.

By analyzing the regional allocation features, there are many types order by Gyeongsang-do, Hamgyeong-do, Gangwon-do. This area is faced east sea, so many fisheries have become records. In Gyeongsang-do, Cholla-do, these area were occupied a large portion of the fruit. And Jeju Island was assigned oranges. Finally, it has been assigned dried, pickled foods than living thing in distant area.

Key Words Local Specialty Donation to the Palace, Jingsangbyeldandngrok, Mulseon, King Suk-Jong, King Yeong-Jo